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방송 내용규제 체계의 재설계 방향 모색: 공정성 심의 폐지를 넘어

2026년 5월 8일 (금) 14:30-15:50 (3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10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한국방송협회

방송 내용규제 체계의 재설계 방향 모색: 공정성 심의 폐지를 넘어

일시

2026년 5월 8일 (금) 14:30-15:50 (3부)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10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한국방송협회

프로그램

사회

홍원식(동덕여대)

발제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방송미디어 내용규제 제도의 재설계:
제도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토론

김희경(공공미디어연구소), 심미선(순천향대), 최민음(동덕여대),
최세경(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영재(한림대)

기획취지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정기학술대회 한국방송협회 특별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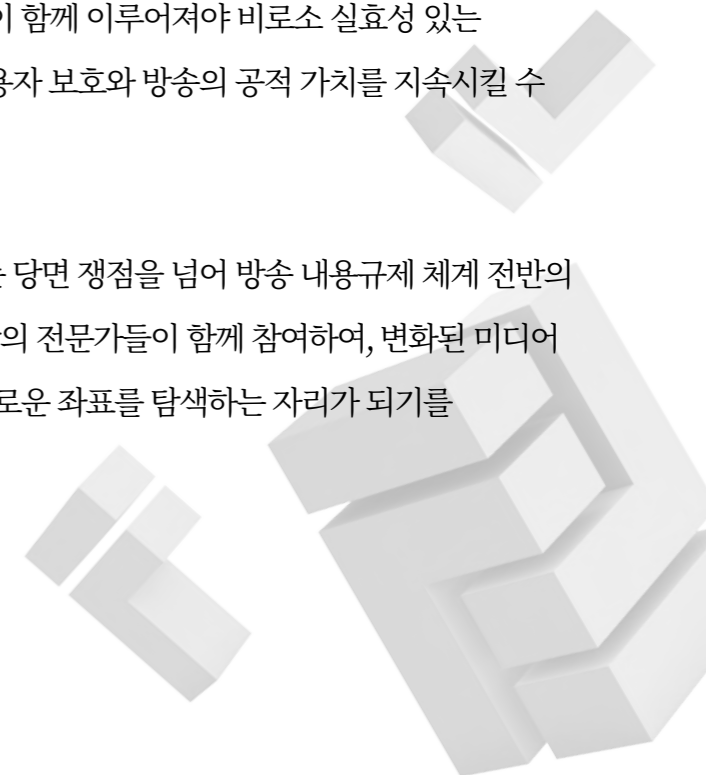
방송 내용규제 체계의 재설계 방향 모색: 공정성 심의 폐지를 넘어

현행 행정심의 체계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래 큰 틀에서 그 골격이 유지되어 왔으나, 미디어 환경은 이미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OTT와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소비의 주요 경로로 부상했고, 시청자는 더 이상 전송 방식이나 사업자 유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비대칭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은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동일한 영상콘텐츠가 유통 경로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 심의는 보도영역에서 정치적 판단 논란과 과잉규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삭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성 심의의 폐지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 맞게 규제의 원칙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체계전환이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본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공정성 심의 폐지라는 당면 쟁점을 넘어 방송 내용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계·산업계·정책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된 미디어 질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심의 체계의 새로운 좌표를 탐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

방송미디어 내용규제 제도의 재설계:
제도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방송미디어 내용규제 제도의 재설계>
-제도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 방송협회 후원세션 발제문,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2026.5.8(금)



SBS드라마 <아내의 유혹>(2008.11.03. ~ 2009.05.01.)

발제: 심 영 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1. 서론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변화1> 위원회의 명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명칭을 (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 제1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함

- 새로운 위원회 명칭에서 의미하는 방송미디어에 대한 정의는 없음. 다만 방미통위법 제1조 설치목적에 "이 법은 방송 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 방송 프로그램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정책영역에 대한 정의없이 부처명만 교체

- 방송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방미통위법 제2조 운영원칙에 목적사업을 추가함. 이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부 이관 받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방송미디어'에 대한 개념정의와는 관계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개편과 '문화미디어산업정책실' 출범 => **부처간 경합적인 미디어정책 추진**

- 2026년1월1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미디어산업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콘텐츠미디어산업관(구 미디어정책 국)을 신설하여, 콘텐츠 정책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장 *문화미디어나 콘텐츠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음

1. 서론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변화2> 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와 위원회의 행정기구화

- ▶ 민간독립기구의 장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행정심의기구의 장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으로 정무직화
- (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록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기구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위촉하여(대통령 3인, 국회 6인 추천)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9인으로 구성된 민간독립기구이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장관급)이 장을 맡은 행정기관이 됨
- 법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는 제4항은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도록 했지만, 호선 이후 심의위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또한 심의위원장은 법 제19조(심의위원장) 제2항에 따라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데, 이는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과 더불어 위원회 운영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제5항 또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심의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만족하면 탄핵을 통해 심의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인 심결을 위촉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형성됨
-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심의위원 위촉과정에서의 정치적 후견 발생 문제와 심의위원이 임기중 국회와 정부로부터 청부를 받아 심의하는 정치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논의의 퇴행

1. 서론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변화3> 신속심의의 강화

- ▶ 디지털성범죄심의회 적용되던 신속심의 대상 확대
- 법 제23조(회의 등) 제4항은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규정위반으로 제재한 경우, 당연위법 대상으로 신속심의 가능. 다만 (비상임)심의위원의 부담 가중

1. 서론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변화4> 방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442) 제32조/제33조 공정성 심의 조항 개정 추진(상임위 통과)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 |
|---|---|
|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2조(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 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개인·가족·공동체 등 사회구성원의 보호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4. 5.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의원입법안 미반영) 6. 국제적 연대와 평화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권익증진과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8.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창달과 다양성 구현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

1. 서론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변화4> 방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15442) 제32조/제33조 공정성 심의 조항 개정 추진(상임위 통과)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 |
|--|--|
| 제33조(심의규정)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장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략) | 제33조(심의규정) 11.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12. 환경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3. 소비자 및 시장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생명 존중과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5. (현행과 같음) 16. 방송광고의 허위성 및 소비자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 17. 재난·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18.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공정성 심의규정 삭제와 공공성/공적 책임 심의로 대체

- 제33조의 심의규정에서 의미하는 공공성과 공적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필요
- 공적책임 수행을 방송심의규정에 적용하여, 자율규제 도입과 연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필요
- 시사보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바꾸지는 않음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정책은 제도의 틀에서 실천적인 지침을 만드는 행위
 -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권기현, 2008, 정책학. 박영사)”
 - 정책은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공표하고 이를 수행하는 통치(Government)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부문의 혼합과 중첩성, 사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다양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으로 국가와 시장, 사회의 총체적인 행위형태가 일방적인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해졌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협치 : 거버넌스(Governnace)’라는 개념 등장
 -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35쪽), 오히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을 줄이고 유동적인 사회현상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국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

거버넌스는 “정부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과정에 대하여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미래의 활동 지침을 내리는 것”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정책의 목적과 실행, 평가
 - 정책은 명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와 행동지침을 바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와 효율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 (Just & Latzer, Sauwein, 2007)
 - 정책 목적이 명확하다면, 다음단계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범위와 주체를 설정하여 추진할 정책의 범위가 자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혹은 다국간, 국제적 규모로 파생할 수 있는 정책인지 살펴보고, 정책과정도 단순한 기준제시인지 구조 규제 혹은 형태 규제가 필요한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제재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
 - 정책추진범위가 정해지면, 진흥 혹은 규제대상에 대한 감독과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
 - 공적규제에서 통치행위가 실패하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와 정권교체가 발생하지만, 다중심성과 협력체계가 중요한 사회적 조정에서는 최종적인 정책실패는 ‘국가의 실패’이자 ‘시장의 실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이러한 이유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조정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효과와 효율에 대한 평가 과정은 명확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규제실패(정책실패) 교정, 단일/실효적 최소기준 적용, 정책당국의 개입과정과 정도, 이해관계조율 규칙 정하기, 시장지배력에 관한 판단과 규제, 시장 진입 장벽의 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수준 정하기 등이 포함됨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규제환경 변화와 혁신
 - (제도혁신의 당위성) 사회변동과 기술발전, 지속적 혁신과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처방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제도혁신을 도모 필요
 - 제도는 결코 무오류한 완전체가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음(Ostrom, 2007). 미디어와 같이 기술과 서비스유형이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적통제만으로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한계 발생
 -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제도가 출범 초기에 제도적 정당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환경변화와 더불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행위자 규제에만 매몰되면 제도의 목적이나 합리성 하락
 - 제도분석은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로 하며 보다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
 - (제도 안정성·형평성) 제도의 목표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안정적 구조 설계(North, 1990, p.6).
 - (표준화) 제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표준을 만드는 행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제도운영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정성 제공
 - (역차별) 동일한 제도에서 경쟁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은 기존의 제도적 경로로 인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활동해 온 사업자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불공정한 규칙(또는 표준)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존사업자들은 엄격한 윤리규정과 심의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새롭게 등장한 후발주자들이 느슨한 윤리규정이나 심의규정 혹은 무규제 상황에서 유튜브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저널리즘에 기반한 언론활동을 하면서 광고시장을 잠식할 경우에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규제의 역효과와 제도개선
 - (규제의 역효과) 특정 규제는 조직이 최적의 행위전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규범, 관행, 문화, 인지적 틀)와 조직 내부에서 조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예측하는게 중요
 -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향) 제도개선은 개별 조직이 있는 자기정체성을 외부 환경변화에 반응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개별 조직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과, 조직구조, 추구하는 목표지향, 선호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연섭, 2003)
 - (제도 동질성) 제도의 동형화는 다양성이 아닌 동질성에 중점을 두며, 모든 제도는 최소한의 동형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추구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관료제의 비효율적 행정의 '심각한 지적 위기'와 다중심적 사회에서의 협력**
 - 정책은 그동안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수행하는 통치(Government)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지탱하는 근간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지시(hierarchical direction)' 구조였음
-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지시'(통치)의 효율성(윌슨 패러다임)**
 - 1) 단일한 권력중추에 의한 정부통제
 - 2) 단일한 권력중추의 책임성 강화 => 선거를 통한 지지와 철회
 - 3)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민대표성 확보 => 절대주권. 공권력의 독점
 - 4) 정치를 통해 행정업무/영역에 대한 정의(입법) 과정을 거쳐, 독립적인 행정업무 수행
 - 5) 정부의 행정기능은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구조적 동형화
 - 6) 전문적으로 훈련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완벽한 관료제적 계층화(hierarchy)
 - 7) 관료조직의 계층화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율을 얻는 능률적인 운영
 - 8) '좋은 행정' 이 사회발전의 기본조건으로 작동(이명석, 2017, 거버넌스 신드롬, 48-49쪽)

11

2. 선행연구

가. 정책연구의 목적

- **통치의 한계와 새로운 사회적 조정의 필요**
 - 관료제를 근간으로 한 계층적 지시만으로 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공포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발생
 -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부문의 혼합과 중첩성, 사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다양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으로 국가와 시장, 사회의 총체적인 행위형태가 일방적인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해 졌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의 필요 =>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 국가행정만으로 정책목표를 완수할 수 없는 통치의 한계 극복
- **적극적 조정(positive coordination)과 소극적 조정(negative coordination)**
 - 적극적 조정: 민관의 공동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관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공동활동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조율(협치)
 - 소극적 조정: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율(자치, 자율의 영역에서 이해관계 조율)

12

2. 선행연구

나. 방송심의제도에 제도적 특징과 한계

- **방송심의제도의 합헌 결정과 '국가행정기관' 판결**
 - 방송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하도록 하는 방송 심의제도는 합헌(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결정)
 - "방송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규제를 통해 헌법이 금지한 검열을 사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침해 우려(김민호·이도형, 2017; 황창근, 2012), 또 민간 독립기구인 신화적 외피(심석태, 2012)에 불과.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등 방통심의위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헌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 방통심의위의 법적 성격은 행정청이며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기존 논의들과 판례에 비추어 심의위원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김민호·이도형, 2017; 최종선, 2014). 2026년부터 방미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서 방미심위는 국가행정기관으로 고착화

13

2. 선행연구

나. 방송심의제도에 제도적 특징과 한계

- **정치적 후견에 포획된 심의제도**
 -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국회에서 6명(여 3명, 야 3명), 대통령이 3명을 위촉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배진아, 2015; 최우정, 2009)로 '정치적 심의'와 심의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존재(노현숙, 2024; 박진우, 2024; 송종현·윤성욱, 2017; 최종선, 2014; 황근, 2023; 황상재 외, 2016). 방미통위법은 심의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후견인이 추천하는 업관(최우정, 2013)의 등장을 막을 수 없어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미흡(노현숙, 2024; 박진우, 2024; 윤성욱, 2015; 최영재, 2024; 황상재 외, 2016).
- **방송심의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
 - 방송법 제33조는 방송심의의 대상을 16가지와 그 밖에 법에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방송 사업자의 방송 제작과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고, 방송심의규정이 방송제작과 운영에 지침으로 작동(조연하, 2012). 특히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추상적이며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표현이 심의규정에 유사하게 반복(정연부, 2014; 조연하, 2012).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심의규정은 심의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배진아, 2015; 송종현·윤성욱, 2017; 윤성욱, 2009, 2015; 이승선·김재영, 2015; 이창훈·우형진, 2011; 최우정, 2021). 류희림 위원장 재임기에 내린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정제재 가운데 방송사업자가 제소한 30건에 대해 법원에서 모두 과잉규제로 판단
 -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최영재, 2024; 최우정, 2013). 심의 결과는 방송평가를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 항목에 포함되고 감점이나 조건부 승인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위축 효과와 자기 검열로 작동(김경환·박성순·심영섭, 2023; 노현숙, 2024; 박진우, 2024; 최영재, 2024; 황근, 2023).

14

2. 선행연구

나. 방송심의제도에 제도적 특징과 한계

- **공정성 심의의 정치적 편향**

- 이창훈과 우형진(2011)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최대 8건이던 공정성 관련 심의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2008년 10건, 2010년에는 19건까지 증가했고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었음. 유승관(2014)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1기 방송위) 공정성 관련 심의 규정 위반 사례에서 여권 위원의 의견이 심의 결과와 94% 일치한 반면 야권위원은 44%에 불과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2기 방송위)에는 여권 83%, 야권 23%의 일치도를 보였다고 분석. 윤성욱·홍성철(2015)은 제2기 방통심의위의 회의록 분석 결과, 위원회의 만장일치 비율이 47.6%인데 비해 '공정성 조항'(제9조 제1항, 제2항) 만장일치 비율은 5.3%와 6.1%로 현저히 낮았음. 박건식(2014)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공정성 심의를 대상으로 여야위원 간 심의 의견과 결과의 일치도 분석 연구에서 지상파 또는 권력 비판 프로그램에서 여권 위원의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송중현·윤성욱(2017)은 제3기 방통심의위 전체 심의 의결 중 평균 만장일치 비율이 73.2%로 증가했지만, 지상파TV와 종편/보도PP에 대한 만장일치 비율은 평균보다 낮고, 정치적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수의견이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객관성 심의에서 만장일치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분석
- 정치권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방송 심의에 반영하거나(박진우, 2024; 허만섭, 2024), 불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후견주의에 기반하여 여야 6:3으로 구성되고, 그 결과가 심의결정에도 대체로 반영됨 (황근, 2023)
- 황현정과 정영주(2026)는 방통심의위가 수행하는 '방송 심의', '방송광고 심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협찬금지 심의' 중 방송 심의가 67.6%를 차지했으며, 방송 심의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심의 규정은 '광고효과'(47.78%)로 나타났고, 전체 심의 의결 중 공정성 및 객관성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정치권력과의 관계 외에 위원장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언론권이 정치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의위원장 정무직화와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 가능성은 심의의 정파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봄

2. 선행연구

나. 방송심의제도에 제도적 특징과 한계

- **공정성에 대한 정의**

- 공정성은 수많은 학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와 어떤 하위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의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과정과 연관됨(배진아, 2015). 학술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서 공정성도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치 사안이나 이념적 이슈를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여 심의가 수행될 경우 심의 과정 자체도 정파적이지만 그러한 심의 결과에 대해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갖거나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정파성에서 자유롭기 어려움(김경환·박성순·심영섭, 2023)
- 특히 종편 4개사가 개국한 직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중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이 적용된 경우가 증가했으며, 의결 과정에서 다수결에 의한 차별과 배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합의, 제재 수위의 자의적 적용과 종편에 대한 관대한 처분, 진영 논리에 따른 차별심의를 복합적으로 작용(김재영·이승선, 2015). 박성호(2025)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공정성을 적용한 심의 의결 현황과 제18대 총선(2008년) 이후 16년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도교양 부문에서 공정성 심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특정 시기에 급등했으며, 이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 심의'의 성격을 지녔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 정책을 적극 비판한 MBC에 심의가 집중되는 등 편파 심의와 표적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함
-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구조를 반영한 심의위원회가 진영 간 대립구조 속에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공정성 심의 전개(강재원·최일우, 2023), 심의위원들이 정치권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방송 심의에 반영하는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허만섭, 2024) 문제가 공정성 심의규정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2. 선행연구

나. 방송심의제도에 제도적 특징과 한계

- **제도적 해결방안**

- **현행제도의 보완**

-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파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심의위원을 추천하거나 여야 비율 균형 조정(노현숙, 2024; 박진우, 2024; 송중현·윤성욱, 2017), 결격 사유 뿐 아니라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 (노현숙, 2024; 박진우, 2024; 심석태, 2012), 제재 조치 심의 의결시 가중된 의결 정족수를 도입(박진우, 2024), 공정성과 객관성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대체(이창훈·우형진, 2011),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심의위원 구성에서의 정파성 배제, 공정성과 객관성 등 정치적 과잉 심의 최소화, 명확성과 최소규제 방향으로 심의 규정 체계 개선, 심의 기준과 적용에서의 타당성·일관성 확보, 장르별 차별적 심의 기준 적용 (김재영·이승선, 2015)

- **공동규제 제도의 도입**

- 작동하는 자율 규제 도입을 위해 감독 기구와의 공동 규제 전환(박경신, 2010; 심영섭, 2025; 유승관, 최우정, 2021), 공정성 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활용한 민관 공동 규제 방안, 질적 균형에 관한 고려를 추가하고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축소하며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 공정성 심의를 유지하되 심의 의결에 특별다수결을 도입하고 정당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박성호, 2025)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심의를 법적 근거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지상파 독과점 시절의 제정된 방송심의규정은 제1장 총칙에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직조되었으며, 큰 틀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 출범이후에도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공격적 규제만 두고 있을 뿐, 종합편성채널의 공격적임이나 의무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
| 제4조(심의의 방법)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광고를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

2008년6월24일 제정

19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 |
| 제6조(자체심의)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
|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규정은 심의규정을 적용할 때,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 특히 제8조에서는 지상파방송의 책임을 다른 방송채널과 구별되게 강조함으로써,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와 기타 방송채널에 대한 심의에 차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 ①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 |

2008년6월24일 제정

20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9조(공정성) |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심의규정의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두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세칙은 없으며, 온전히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실천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자체심의의 결과를 방송심의에 어떻게 반영하고, 감경할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선의'에 맡김 |
|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 |
|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 |

2008년6월24일 제정

21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3조(토론프로그램) | ①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하위조항 => 시사보도에 적용되는 심의기준 |
| 제14조(객관성)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제15조(출처명시) |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 ①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 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2절 객관성 하위조항 => 시사보도에 적용되는 심의기준 |
| 제17조(오보정정) |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 |
|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 공지사항, 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2008년6월24일 제정

22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9조(사생활 보호) |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2절 객관성 하위조항 => 시사보도에 적용되는 심의기준 |
| 제20조(명예훼손의 금지) |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3절 권리침해금지 하위조항 => 시사보도에 적용되는 심의기준 |
|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제22조(공개금지) | ①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2008년6월24일 제정

23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4차 개정(2010년)

- 2010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차 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 | 간접광고 가상광고 허용에 따른 심의 규정 일부 개정 |

2010년2월18일 개정

- 2010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차 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 | 애니메이션캐릭터 이용광고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심의규정 일부 개정 |

2010년8월17일 개정

- 2010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차 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조(정의) |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중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초·중·고 방학시간대를 반영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확대 |

2010년11월16일 개정

25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2008년)/ 1차 개정(2008년)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①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3절 권리침해금지 하위조항 => 시사보도에 적용되는 심의기준 |
|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 | ①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방송을 할 때에는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난방송의 실시 및 재난방송의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은 「재난방송실시에관한기준」에 의한다. | 제2장 일반기준 제3절 권리침해금지 하위조항으로 있던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을 제3절의2 재난방송을 신설하여, 재난방송에 관한 규칙을 심의규정에 3개 조항으로 포섭 |

2008년6월24일 제정

- 2008년 방송심의에 관한 1차 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 | ①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방송을 할 때에는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8.9.2) | 방송사 내규를 심의규정에 적용하는 법체계(위계)의 문제점 해소 |

2008년9월2일 개정

24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차 개정(2012년)

- 2012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차 개정(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 | 삭제(2012.12.6) | 제2장 일반기준 제3절 권리침해금지 하위조항으로 있던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을 제3절의2 재난방송을 신설하여, 재난방송에 관한 규칙을 심의규정에 3개 조항으로 포섭 |
|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이 절에서 "재난방송"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이 절에서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등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2012년12월6일 개정

26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차 개정(2014년)

- 2014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차 개정(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3조(적용범위) | ①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 중계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9] | 2011년12월1일 종편 출범 이후 심의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6차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이 강화됨. 방송심의 규정 적용범위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시간 방송이외에도 방송과 유사한 것(즉 방송사가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까지 포함하였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제3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헌법'을 추가하여, 방송심의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유보와 법률유보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 |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경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

2014년1월9일 개정

27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차 개정(2014년)

- 2014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6차 개정(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9조(공정성) | ①방송은 진실에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9>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정경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 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9>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포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정성에 대한 심의규정에서 제14조에 있는 객관성을 심의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의 방송이용에 대한 부분에 라디오방송사업자도 포함됨을 추가로 명시함. 또한, 토론프로그램을 대담, 토론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조롱 또는 회화화를 금지함. 통계 및 여론조사에 대한 심의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심의기준 강화에 맞춰 강화함 |
|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토론프로그램) | ①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균형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대담, 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회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 |
|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 |

2014년1월9일 개정

28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차 개정(2014년)

- 2014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③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⑤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인용보도에 대한 규정 강화와 제3절의2 재난방송을 재난 등에 대한 방송으로 개칭하고, 재난상황보도 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방송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킴 |
| 제3절의2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신설 2012.12.6, 2014.12.24>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미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재난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③ 사업자가 재난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4.12.24> | |

2014년12월24일 개정

29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차 개정(2014년)

- 2014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 통계 및 여론조사 결과 인용보도에 대한 규정 강화와 제3절의2 재난방송을 재난 등에 대한 방송으로 개칭하고, 재난상황보도 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방송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킴 |
|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 |

2014년12월24일 개정

30

|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 | |
|---|--|---|
|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차 개정(2015년) | | |
| ● 2015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조항 | 내용 | 특징 |
| 제7조(방송의 공적 책임) |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경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④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 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 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 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사실보도와 해설은 평이 뒤섞인 경규뉴스프로 그램은 물론 토론 대담프로 그램에서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강화된 조항이며,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에는 바른말을 사용하도록 권고함 |
|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 ①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설 2015.10.8> | |
| 2015년10월8일 개정 31 | | |

|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 | |
|---|---|------------------------------------|
|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차 개정(2016년) | | |
| ● 2016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조항 | 내용 | 특징 |
|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8. "외주제작사"란 법 제2조제27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7.28.> | 방송법에 따라 외주제작사에 대한 경의를 신설하여 심의절차 정비 |
| 2016년7월28일 개정 33 | | |

|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 | |
|---|---|---|
|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차 개정(2015년) | | |
| ● 2015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조항 | 내용 | 특징 |
|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전문개정 2015.10.8] | |
| 제16조(통계 및 여론 조사) | 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지상파방송사 독점 시절에는 발생하지 않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판중인 사건, 보도형식, 범죄사건보도 등에서 세부규정을 강화함 |
|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 방송은 보도 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
|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 ③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
| 2015년10월8일 개정 32 | | |

|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 | |
|--|--|---|
|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2016년) | | |
| ● 2016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조항 | 내용 | 특징 |
| 제16조(통계 및 여론 조사) | ①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5.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 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4.1.9., 2016.12.22.>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⑤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2016.12.22.> 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방송보도의 전달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용보도, 추이 보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 공표에 맞춰 인권보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
| 제21조(인권보호) |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경력·출신지역·방안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2016.12.22.> ④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 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4.1.9.] | |
| 2016년12월22일 개정 34 | | |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2019년)

- 2016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3.] | |
| 제19조(사생활 보호) |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9.23.> ④ 방송은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9.> | |
|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 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3.] | 사생활 보호,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와 관련한 조항 신설 |
| 제21조의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 | ①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법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9.23.] | |

2019년9월23일 개정

35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2020년)

- 2020년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12차 개정(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6조(통계 및 여론 조사) | ① 통계조사(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는 제외한다)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4.12.24., 2015.10.8., 2020.12.28.> 1. 조사의뢰자 2. 조사일시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방법 5. 표본오차 6. 질문내용 7. 응답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6.12.22., 2020.12.28.> ③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9.> ④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⑤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0.12.28.> ⑥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2016.12.22., 2020.12.28.> ⑦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및 조사일시만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2020.12.28.>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에 관한 결과 방송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변경되면서, 전체 조항이 개정됨 |

2020년12월28일 개정

37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2019년)

- 2016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2조(공개금지) | ①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가해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3.] | 범죄사건 가해자에 대한 인 권보호 규정 신설 |

2019년9월23일 개정

36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2020년)

- 2020년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12차 개정(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19조의2(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 방송은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 |
| 제21조의2(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 ①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 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본조신설 2019.9.23.] |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 |
| 제21조의4(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등) | ① 방송은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을 다룰 때에는 가족 유형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 |

2020년12월28일 개정

38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공정성 및 시사보도와 관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2020년)

● 2020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차 개정(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항 | 내용 | 특징 |
|--------------------------|--|--|
|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① 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1.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감염병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감염병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감염병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③ 사업자가 재난·감염병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병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 코로나19이후 발생한 사회 혼란과 관련하여 재난보도에 감염병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제24조의3에서 규정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와 같이 이해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제23조 범죄피해와 제24조의3의 재난·감염병 등에 의한 피해를 명확히 명문화함 |
|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 방송은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8.>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 |

2020년12월28일 개정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심의규정 개정 요약

●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등장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역차별

➢ 지상파방송의 책임(제8조)

- 2008년 방송심의규정 재정 당시 독과점 사업자였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제8조를 통해 공적 책무를 부과했지만,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후에도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조항은 지상파에만 부과. 제8조는 인허가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조항을 폐지하거나 시사보도를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공통으로 부과해야 할 조항

➢ 종편 규제를 위한 심의규정 강화

- 2011년 종편 출범 후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사실보도와 해설·논평이 뒤섞이는 뉴스보도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으며(제10조), 토론프로그램에 적용하던 제13조는 토론과 대담프로그램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 특히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범죄피의자에 대한 보도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도록 강화됨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의 증가와 심의규정의 확대 적용

- 시사보도와 연예오락이 장르적으로 결합하면서, 심의규정도 그동안 주로 드라마와 연예오락에 적용하는 제4장 윤리적 수준(제25조 윤리성~제34조 표절금지)으로 확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공정성' 조항의 제.개정 현황

방송심의규정 개정 요약

● 가장 많이 개정된 조항과 신설 조항

➢ 통계 및 여론조사

-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2008년 방심위 출범이후 가장 많이 개정된 조항은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보도에서 반영해야 할 필수고지 강화에 맞춰 총 4차례 개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방송보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용보도와 추이보도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필수고지 사항을 간소화 함

➢ 재난방송 규정의 강화

-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은 2012년 제5차 개정부터 세부조항(3개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제12차 개정에서는 재난방송에 감염병이 추가되면서, 통계 및 여론조사 보도와 더불어 의무사항이 세부적인 심의규정으로 확대됨. 재난방송은 코로나19이후 감염병에 대한 '허위정보'와 사회혼란정보가 늘어나면서, 감염병도 하나의 사회적 재난으로 격상하여, 재난방송에서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을 강화함

➢ 인권보호 강화

- 범죄보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에서 피해자 보호, 어린이 학대사건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추가됨(1개조항에서 4개조항으로 확대)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사.보도에 대한 심의 현황

방송심의안건의 수와 제재현황(2008년~2025년)

| 연도별 (기수별) | 전체 심의 | | | | | 방송심의 | | | | | 방송심의 /전체심의 비율(%) |
|----------------|--------|-------|-------|-------|------------------------|--------|-------|-------|-------|------------------------|------------------------|
| | 총안건수 | 문제없음 | 행징지도 | 법정제재* | 법정제재 /총안건수 비율(%) | 총안건수 | 문제없음 | 행징지도 | 법정제재* | 법정제재 /총안건수 비율(%) | |
| 2008~2011(1기) | 2,931 | 836 | 1,316 | 779 | 26.6% | 2,311 | 519 | 1,039 | 753 | 32.6% | 78.9% |
| 2011~2013(2기) | 2,993 | 326 | 1,415 | 1,226 | 41.8% | 2,027 | 187 | 947 | 893 | 44.1% | 67.7% |
| 2014~2016(3기) | 3,709 | 433 | 2,232 | 1,040 | 28.1% | 2,546 | 273 | 1,492 | 781 | 30.7% | 68.6% |
| 2018~2020(4기) | 3,657 | 497 | 2,501 | 659 | 18.0% | 2,128 | 403 | 1,302 | 423 | 19.9% | 58.2% |
| 2021~2023(5기) | 2,199 | 268 | 1,557 | 374 | 17.0% | 952 | 158 | 634 | 160 | 16.8% | 43.3% |
| 2024~2025(6기)* | 746 | 72* | 627 | 116 | 15.6% | 71 | 31* | 401 | 89 | 18.1% | 66.1% |
| 총계 | 16,235 | 2,432 | 9,648 | 4,194 | 25.8% | 10,035 | 1,571 | 5,815 | 3,099 | 30.9% | 61.8% |

* 법정제재에는 과징금도 포함한 수치임. 제6기는 2024년7월에 취임했으나, 3인으로는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2025년6월 면직되면서 사실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6기(2024~2025) 통계에 포함된 문제없음 수치는 2024년 하반기 통계가 빠져 있는 수치임
 * 통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기~제5기 백서와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8호~30호를 참고하여 작성함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사.보도에 대한 심의 현황

방송심의안건 가운데 공익성/객관성 조항 적용 안건 현황(2008년~2025년)

| 연도별 (기수별) | 방송심의 | | | | | 공익성/객관성 조항 적용 | | | |
|----------------|--------|-------|-------|-------|------------------------|---------------|-------|----------------------|-----------------------|
| | 총안건수 | 문제없음 | 행정지도 | 법정제재* | 법정제재 /총안건수 비율(%) | 공익성 | 객관성 | 공익성적용 /총안건수 비율(%) | 객관성 적용 /총안건수 비율(%) |
| 2008~2011(1기) | 2,311 | 519 | 1,039 | 753 | 32.6% | 49 | 94 | 2.1% | 4.1% |
| 2011~2013(2기) | 2,027 | 187 | 947 | 893 | 44.1% | 57 | 132 | 2.8% | 6.5% |
| 2014~2016(3기) | 2,546 | 273 | 1,492 | 781 | 30.7% | 149 | 373 | 5.9% | 14.7% |
| 2018~2020(4기) | 2,128 | 403 | 1,302 | 423 | 19.9% | 65 | 288 | 3.1% | 13.5% |
| 2021~2023(5기) | 952 | 158 | 634 | 160 | 16.8% | 44 | 138 | 4.6% | 14.5% |
| 2024~2025(6기)* | 71 | 31* | 401 | 89 | 18.1% | - | - | - | - |
| 총계 | 10,035 | 1,571 | 5,815 | 3,099 | 30.9% | 364 | 1,025 | 3.6% | 10.2% |

* 방송심의 안건에서 공익성/객관성 조항이 적용된 안건의 수와 비율로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서 문제없이/행정지도/법정제재로 나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제재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산출 필요.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적용에 대한 최근 연구로 <황현정,정영주(2026)의 '정치 심의'는 실재하는가? - '위원장 효과'의 가능성, 방송통신연구 2026년봄호 33~72쪽> 참고
* 제6기 심의관련 공식통계는 위원회 조직이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미공개 상태임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사.보도에 대한 심의 현황

방송심의규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심의 요약

- 시사.보도에 대한 방송심의의 특징

- 방송심의 안건의 비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안건 가운데 방송심의 안건은 평균 61.8%였지만, 대부분은 광고효과(은폐성 광고)에 해당
- 방송심의안건 가운데 공정성 규정이 적용된 안건은 전체의 3.6%수준이었으며, 객관성 조항이 적용된 안건은 전체의 10.2%였음. 방심위 중.후반기(2018~2025)로 갈수록 통계 및 여론조사와 토론.대담프로그램 등에 대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
- 방심위 출범 초.중반기(2008~2017)에는 법정제재 건수가 많았지만, 대부분 '광고효과'를 준 전문채널과 SO채널 등에 제제가 몰려 있었음. 그러나 중후반기로 갈수록 법정제재는 자상파방송사업자부터 종편사업자까지 골고루 분포하게 되며, 집권정당에 따라 법정제재를 많이 받는 사업자가 바뀌는 '정치 심의' 경향이 있었지만, 제5기 보궐 위원장, 제6기 위원장을 맡았던 류희림 위원장 시기에는 시사.보도에 대한 법정제재가 특정한 사업자에게 몰렸을 뿐만 아니라, 시사.보도에서는 예외적으로 간혹 내려졌던 '과징금' 결정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함

- 통계의 불안정성

- 2024년 이후 방심위에서 공개한 심의관련 통계는 의도적으로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에 대한 개관을 어렵게 만드는 두루뭉술한 상태로 공개되었으며, 회의록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정제재에 대한 사항만 파악이 가능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규제화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ation)

- 통치와 협치, 자치

- '계층적 지시'로서의 '통치(공적규제)와 '협치'(공동규제) 그리고 자치(자율규제)
- 라처 등은(Latzer et al, 2015) 이러한 '계층적 지시'를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식을 국가규제와 대안규제로 나누고, 대안규제는 더 세분화하여 공동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함

| 국가규제 | 대안규제 | | |
|------|----------|----------|------------------------|
| | 공적규제(통치) | 공동규제(협치) | (광의) 자율규제 (협의) 자율규제 |

*출처: Latzer et al, 2015, p.36.

- 공적규제: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 수행. 법령과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국가사무 수행. 관료제를 제도운용의 근간
- 공동규제: '계층적 지시'를 국가가 민간에 위탁. '규제화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ation)'
- 자율규제: 규제기준의 제정과 관리감독의 유무에 따라서 광의와 협의의 자율규제를 구분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공정성 심의에 대한 제안

- 대안: 공정성 심의 규정 대폭 축소와 단계적인 공동규제(자율규제와 행정규제) 도입

- 현재의 공정성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보도의 자유,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법정제재 시 방송사업자의 방통위 제재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패소율이 높음
- 제4기(2018~2021)에서 공정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심의안건 감소와 더불어 '심의위원이 방송사업자의 규정 위반여부를 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속의가 진행됨
- *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난은 오히려 증가
- 공정성 심의조항의 남용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송심의 제도를 자율규제와 행정규제를 결합한 공동규제(협력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공동규제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공동규제는 행정규제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심의지정사업자로 인증하고, 자체적인 심의가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업계에 독립적으로 자율규제기구를 출범시키도록 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규제기관이 직접 심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방심위는 자율규제기구 및 자율심의지정사업자인 증 및 감독업무와 자율규제기구의 규정 오해 및 남용사이에 대한 보완심의 및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만 진행
- 공정성 심의와 과도한 정당/정치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여당이 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중심에서 공동규제 도입을 통해, 미디어 스스로 품질을 강화하도록 혜택(incentive)과 처벌(panelty) 강화 필요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심의규정 정비와 전수심의의 포기

● 심의규정 대폭 축소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각종 심의규정은 사실상 방송사업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제도는 전형적인 폐해규제 제도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규제하는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정목록(negative list)을 늘려 왔음. 즉, 심의규정 증가는 위원회의 성실성이나 조직이기주의와 관련 없는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함
- 심의제도 자체의 특성상 폐해규제를 위한 조항신설이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대폭 축소와 규제 완화도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선위원회로 확대하여, 동 위원회가 정기적으로(1년 혹은 2년 기간) 규정개정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외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전수심에서 민원심으로 전환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폐해규제를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심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민원심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심의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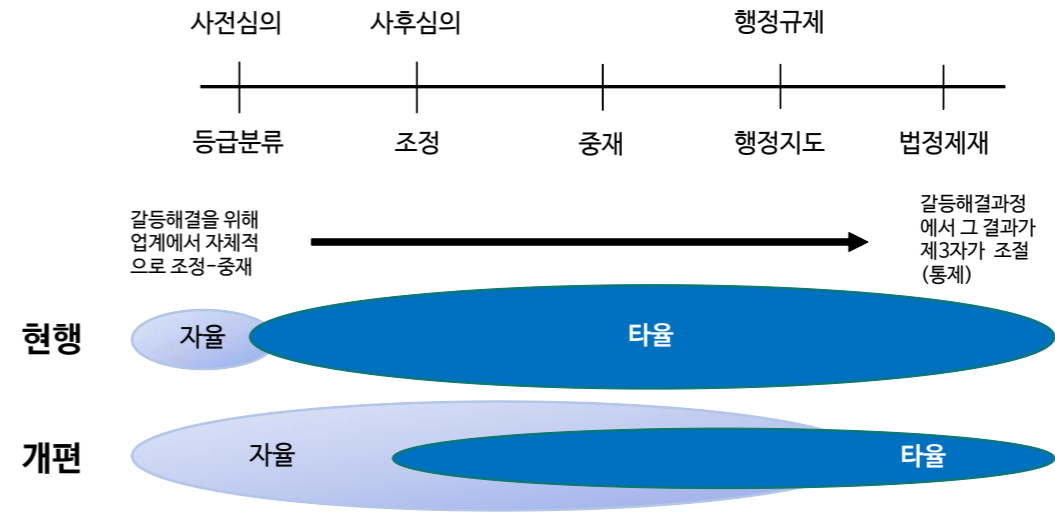
방송법 개정이후의 대안(1) - 게으른 선택, 입법취지에 맞춰 단순 개정

● 공정성 조항삭제 또는 타 개념으로 대체

-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내용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 제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공공성)**
- ▶ 제9조 **공정성(균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 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균형성의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방송법 개정이후의 대안(2) - 어려운 선택, 공동규제



※출처: 자체작성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방송법 개정이후의 대안(2) - 어려운 선택, 공동규제

● 공동규제를 위한 조항 신설 및 위임규정 신설

- ▶ 공동규제를 위해서는 심의규정 제6조의 자체심의 규정에 이어 자율심의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위임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관리규정을 신설 필요
- ▶ 제6조의2(자율심의지정사업자의 자율심의)
- ▶ 제6조의3(자율심의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 ▶ 제6조의4(자율심의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 ▶ 제6조의5(자율심의의 효력)
- ▶ 제6조의6(자율심의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 ▶ 제6조의7(직권심의 등)
- ▶ 제6조의8(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 지원업무)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방송법 개정이후의 대안(2) - 어려운 선택, 공동규제

- 공동규제 조항 신설(예)

| 현행 방송심의규정 | 공동규제 및 위임규정 신설 |
|--|--|
|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이하 "자체심의기구"라 한다)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의2(자체심의의 지정사업자의 자율심의)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심의지정사업자(이하 "자율심의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한 방송내용에 관하여 그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제공 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제작 또는 송출, 제공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율심의사업자는 자율심을 통해 제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 | 제6조의3(자율심의지정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심을 할 수 있는 자율심의지정사업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율심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비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다.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율등급지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율심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이하 생략) |

6. 결론: 공정성 심의규정만 폐지되면, 나아질 것인가?

고질적인 정치민원의 병폐와 정치적 후견(정치인의 인사 / 심의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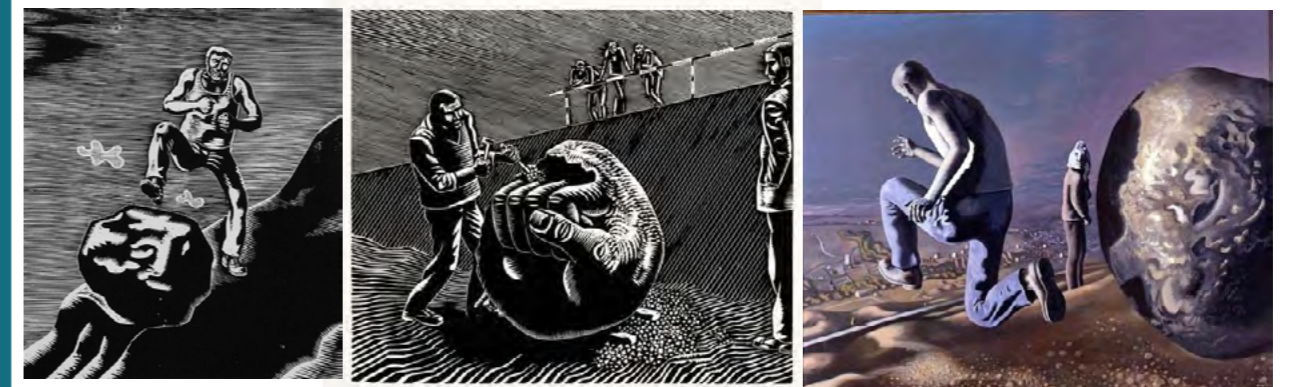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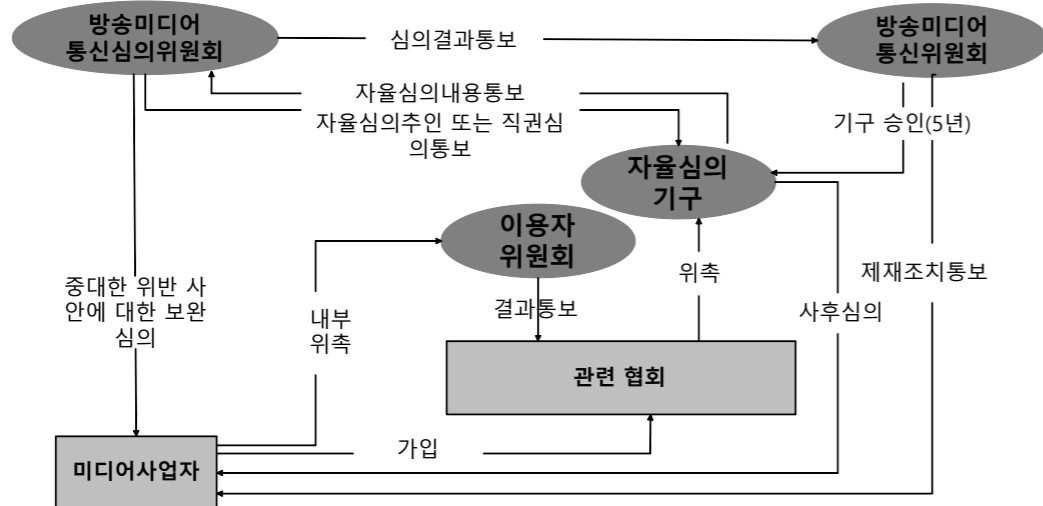
- 정당/정치인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 방송보도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의 상당수는 정당관계자나 정치인이 본인 혹은 대리인, 지인을 통해 중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수이며, 비슷한 사례로 아이돌을 비롯한 유명인 팬클럽과 종교인을 비롯한 공인 지지자에 의해 발생함
-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로 분류됨. 그럼에도 위원회는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민원인이 자신이 민원제기자라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가 많음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중복민원에 대한 병합과 심의결정 이력이 있는 유사안건, 심의대상이 아니거나 안건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사무처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종결후 보고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민원은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할 경우에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안건접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심의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경우, 안건을 자동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물론 민원인이 기각된 안건을 다시 접수할 경우에는 처리해야 하지만, 최소한 공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심의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허위정보나 법원 판결로 허위로 판단된 사안을 근거로 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사무처에서 민원인에게 기각사유를 통보하고 직권 종결
- 또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민원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그러나, 정치인의 인사 개입과 청부 심의, 정치심을 위한 안건 밀어 넣기는 제도만으로는 해결 불가능
- '악의 평범성'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큰 제도적 한계 - 제도의 부패로 연결됨

5. 공정성 심의 폐지를 통한 정치심의와의 단절

방송법 개정이후의 대안(2) - 어려운 선택, 공동규제



Wolfgang Mattheuer의 <거만한 시시포스>, <조각하는 시시포스>, <도망가는 시시포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